

##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가이드 라인

- 이 지침서는 공정거래법의 모든 내용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공정거래법은 매우 복잡하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어떤 경우이든 법적 결론은 결국 특정한 사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지침서는 모든 의심스러운 경우에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 이 지침서의 주요목적은 법률부서에 자문을 구하기 전에 당신으로 하여금 먼저 잠재적인 위험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문제들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 ◆ 공정거래 행동지침

1. 아래내용들에 대해 경쟁자와 합의(협정) 해서는 아니됩니다.

- ▶ 공사 입찰수주시의 가격 관련 공동행위
- ▶ 공사 수주입찰시 연고권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제한(들러리)

2. 가격이나 기타 민감한 경쟁관련 문제들을 논의하거나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회의에 경쟁자와 함께 참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경쟁자와 함께 참석한 회의 중에 가격에 관해 논의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대한 의사표시를 한 후 회의석상을 떠나야 합니다.
3. 경쟁자와 오해를 살 수 있는 불피롱한 접촉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4. 이 지침서에 언급된 규칙에 대한 주의 없이 협회나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업원이 참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5. 고객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 ▶ 자사가 제시한 특정가격을 지키지 않는 고객에 대한 거래거절 또는 거래 종료를 위협하는 행위
- ▶ 다른 고객의 가격활동에 관해 고객과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6. 거래상대방이 자사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한 자사도 이런 고객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객을 위협하거나 자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사제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의심스러운 문제들은 언제나 법률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 사업자단체(TRADE ASSOCIATION) 활동 관련 행동지침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는 행위들을 회피하기 위하여는 회사 및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지침서에 따라야 합니다.

### 1. 구성원(회사)

사업자단체(구성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종업종 사업자 단체)의 구성원은 단지 기술개발, 소비자교육, 정부규제와 같은 영역에 있어 합법적인 기능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자간의 미팅자체가 금지된 비즈니스 문제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단체의 구성원들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회사)들은 법률부서의 조언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2. 법률고문 혹은 법률부서

사업자단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가장 최선의 방어책으로 동종 업계 사업자단체가 주관하는 회의에 적임의 공정거래관련 법률고문이나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절차들

사업자단체로부터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만약 서면 안건과 회의시간의 사전 유포 등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면 최소화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이러한 안건과 시간은 법률부서에 의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 4. 사업자단체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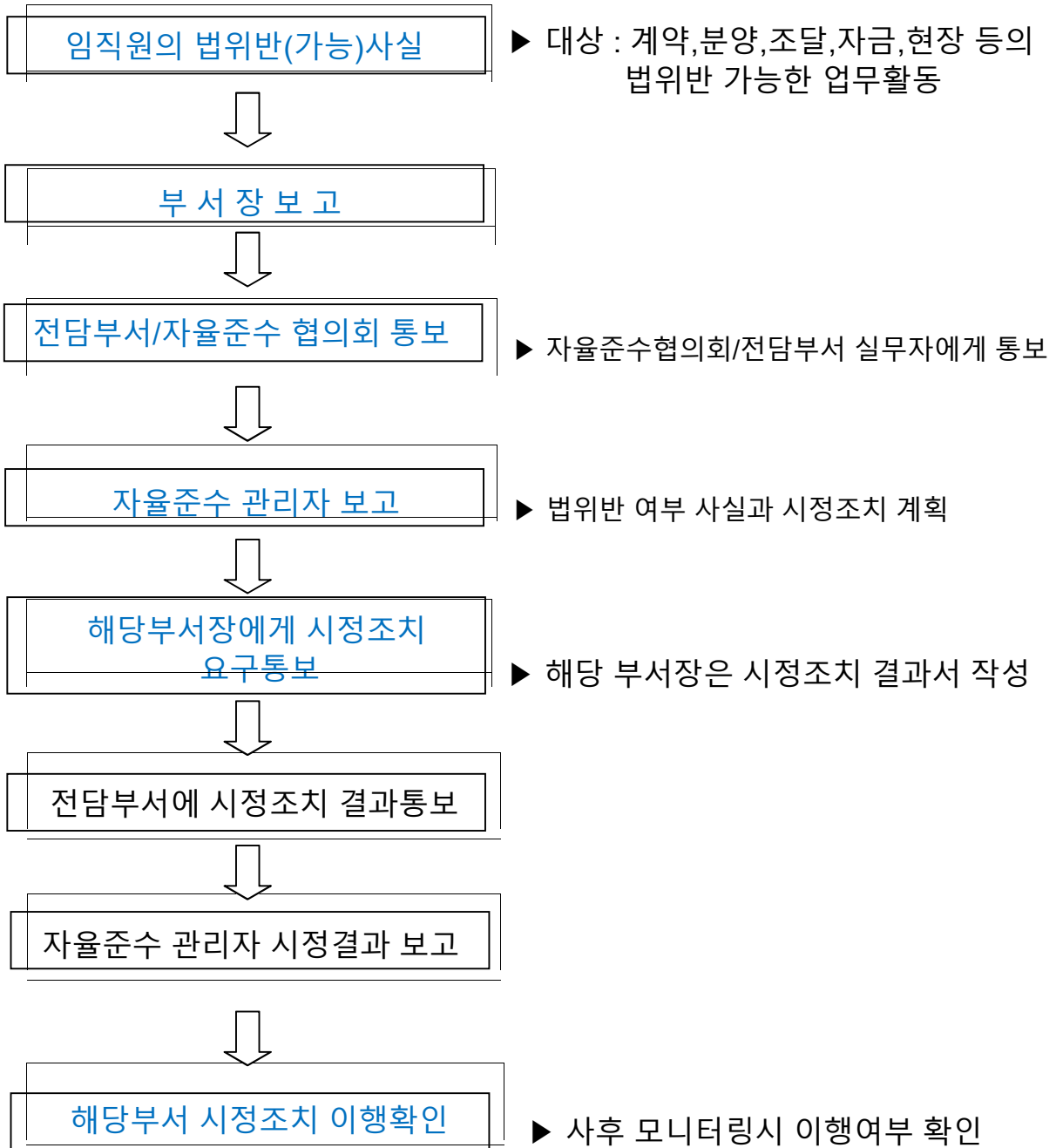
#### ■ 사업자단체 미팅토론 주제.

가격이나 판매조건, 비용과 후속제품, 마케팅계획과 같은 경쟁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토론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회의중 모두 금지됩니다.

#### ■ 통계자료 보고.

단순히 통계상의 자료는 개인 기업들의 자료들이 다른 기업에게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 ◆ 공정법 위반 발생시 보고 절차



# 1. 총 칙

## 1. 자율준수편람의 목적

이 '자율준수편람'은 당사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는 한편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회사'로서의 당사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자율준수편람의 효력

이 자율준수편람은 2004년 8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자율준수관리자가 이를 폐지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 3. 역할과 책임

회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의결로써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반영하여 이 자율준수편람을 개정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과 관련한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4. 적용대상

이 자율준수편람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며,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자율준수편람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자율준수프로그램

- ① "자율준수프로그램" 또는 "CP(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말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 또는 "자율준수 매뉴얼"이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정 시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편람을 말한다.

## 6. 이해당사자

① “회사” 또는 “당사”란 “대림산업(주)”을 말한다.

② “자회사”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당사의 계열사를 말한다.

③ “납품업체”란 회사가 판매할 상품을 회사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점포임차인”란 회사매장의 일부를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판매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회사에게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④ “경쟁업체”란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거래업체”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공급업체, 고객, 기타 제 3자를 말한다.

⑤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⑥ “고객” 또는 “실수요자”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수요자를 말한다.

⑦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 7.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지침

### 가.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하도급법”이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표시광고법”이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약관법”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방문판매법”이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할부거래법”이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전자상거래법”이란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가맹사업법”이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공정거래 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1~8)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한다.

“법”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나. 7 대 핵심요소의 이행

### 1) 최고경영자의 의지 표명

최고 경영자는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의무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 거침을 전직원들에게 선언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이사회 의결의 결의로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관리자와 협의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 와 범위반의 사전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이나 행사를 주최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의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정통한 고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되, 생산·영업, 구매·조달, 표시·광고, 고객지원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고, 자율준수편람의 제정 및 개정,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집행, 감시, 제재, 개선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3) 자율준수편람의 제정 및 개정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위 및 협회와 협력하여 자율준수편람을 제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신규 제정과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자율준수편람을 개정할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편람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직원들 및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4) 교육 시스템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법위반 행위를 사전 예거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비하고, 공정위 및 협회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교재를 개발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 경영자 및 필요한 부서 단위로 매 반기마다 1 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 종료 후 5 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 5) 감시 및 감독 시스템

자율준수관리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회사의 제반 활동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최고경영자와 협의하여 개선거안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 6) 위반에 대한 자율규제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조사하여 회사의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 기타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경고, 전직, 업무정지, 감봉, 해고 등 필요한 징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의 조사 내용 및 관련 자료와 문서를 기록,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 ▶ 자율준수프로그램 제재조치 기준

| 구분  | 연간 1 회 위반   |          | 연간 2 회 위반              |          | 연간 3 회 위반 |
|-----|-------------|----------|------------------------|----------|-----------|
|     | 조치          | 시정조치 불이행 | 조치                     | 시정조치 불이행 | 조치        |
| 행위자 | 시정조치 경고장 발부 | 시말서 제출   | 시정조치 경고장 발부/<br>시말서 제출 | 인사위원회 회부 | 인사위원회 회부  |
| 부서장 |             |          | 시정경고장 발부               | 시정경고장 발부 |           |

#### 7) 문서관리 시스템

자율준수 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기록,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 8).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경쟁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임직원은 자율준수담당부서 또는 사이버 신문고에 신고한다.

회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떤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쟁법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거한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할 수 있다.

## 9)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운영 VISION 및 전략방향

|     |                                   |
|-----|-----------------------------------|
| 비 전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정착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
| 전 략 | 실질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운영          |

|      |  |
|------|--|
| 실행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범적인 자율준수 문화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임직원의 적극적인 자율준수 의식확산 및 자발적 참여유도</li> </ul> </li> <li>■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교육, 특별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li> </ul> </li> <li>■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내부감독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내부제보 시스템 운영</li> </ul> </li> <li>■ 법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및 사례전파</li> </ul> |
|------|--|